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사회 전반으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국민 일상에 침투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약류 검사 도입(안 별표)

현행 법령상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인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판정을 위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나. 신체검사 서식 위임(안 제3조의2)

신종 마약류 출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개정 수요·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체검사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르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신체검사 유효기간 규정(안 제8조)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의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를 “전문의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서 및 재신체 검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신체검사의 유효기간)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마약류 검사에 대하여는 4개월)으로 한다.

별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 판정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u>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u>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u>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u>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① -- ----- ----- <u>고려</u> <u>하여</u> ----- ----- ----- ----- ----- <u>제출한</u> ----- ----- ----- -----.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u>전문의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u> 실시하며, 합격·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② ----- ----- ----- ----- <u>전문의가</u> ----- ----- ----- -----.		
③ (생략)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서 및 재신체검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제8조(신체검사의 유효기간) 제3조</u> <u>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u> <u>검사 및 재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u> <u>판정일로부터 1년(마약류 검사에</u> <u>대하여는 4개월)으로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208